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⑥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업종	⑧ 승인·허가(관리) 번호	제 호
------	----------------	-----

사용개시대상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⑨ 시설명	⑩ 시설규격 (능력)	⑪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⑫ 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 사용개시 예정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소각시설 나. 열분해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kg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바.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1. ①란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 및 허가 업소명을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 2. ⑦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 3. ⑧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그 외의 경우에는 승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4. ⑩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